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9년 4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최근 3개년 상장법인 감리 결과 분석 및 향후 감리방향
- 「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前後 해운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 세무 및 법률정보

-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최근 3개년 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석 및 향후 감리방향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4. 17]

감리결과분석대상

1. 감리결과 분석대상

□ (분석대상) 최근 3 년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감리종결된 상장법인 총 271 사입니다.

◦ 감리결과 분석대상(상장법인) 회사 수는 회계기획감리실 신설 등 감리부서 확대에 따라 증가 추세 ('16년 80 사 → '17년 91 사 → '18년 100 사)

◦ 표본감리 회사 수는 총 212 사이고, 혐의감리 회사 수는 총 59 사

[감리유형에 따른 용어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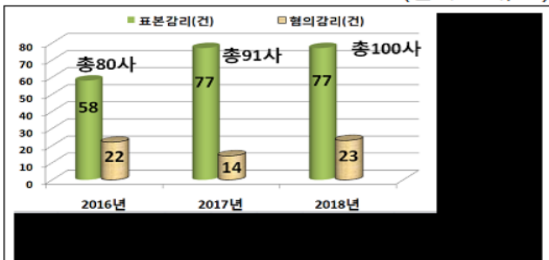
① 표본감리 :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감리로, 표본추출은 분석위험요소(횡령·배임 발생,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가 있는 회사 우선추출 방법과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 등을 병행

② 혐의감리 : 금감원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사항을 사전인지하여 실시하는 감리

최근 3년간 감리결과 분석대상(상장법인) 회사 수 현황

(단위 : 사, %)

구 분	'16년	'17년	'18년	'17년대비	
				증감	증감률
표본감리	58	77	77	-	-
혐의감리	22	14	23	9	64.3
합 계	80	91	100	9	9.9



감리결과 분석

2. 감리결과 분석

가.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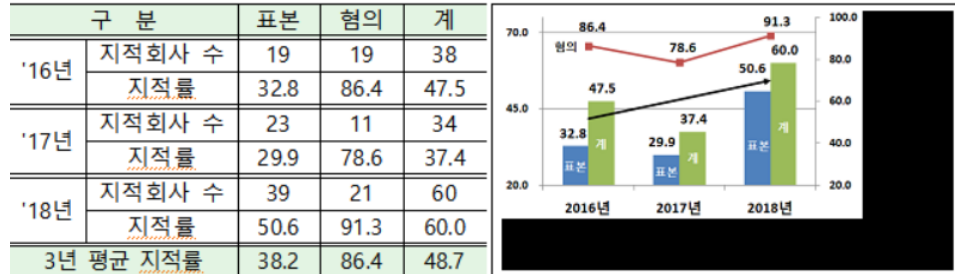
□ (감리지적률) 최근 3 년간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은 표본감리 38.2%, 혐의감리 86.4%로 나타납니다.

◦ 표본감리 지적률은 '18년 50.6%로, '16년(32.8%)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18년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개발비 테마 등 표본선정 시 분석위험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을 확대한 것에 기인

◦ 혐의감리 지적률은 '18년 91.3%로, '16년(86.4%) 대비 소폭 증가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종류별 감리결과 지적률**

(단위 : 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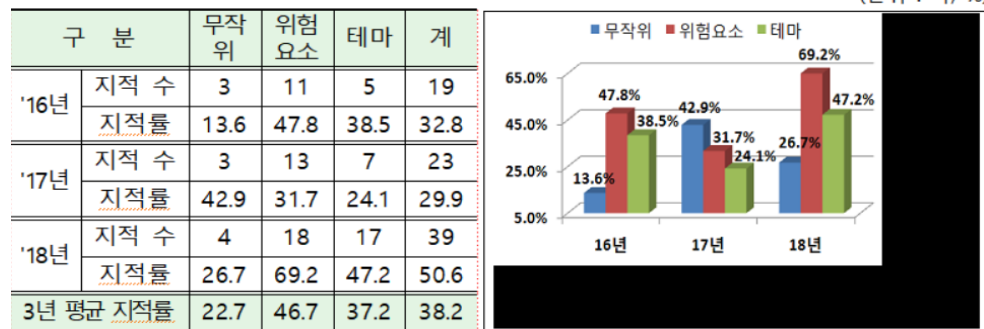
◦ (표본감리 선정방법별) 분식위험요소 및 테마감리로 선정된 감리 대상회사의 '18년 지적률은 각각 69.2%와 47.2%로, 평균 지적률(46.7%와 37.2%)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 위험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무작위표본의 '18년 지적률은 26.7%로 평균 지적률(22.7%)을 소폭 상회하고 있어, 분식위험요소 및 테마 선정 표본이 감리 지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표본감리 선정방법은 무작위 표본추출, 분식위험요소(횡령·배임 발생,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등) 해당회사 우선추출, 회계오류 가능성이 높은 회계이슈에 대해 감리대상 선정(테마감리) 등이 있음

**최근 3년간 상장법인 표본감리 선정방법별 감리결과**

(단위 : 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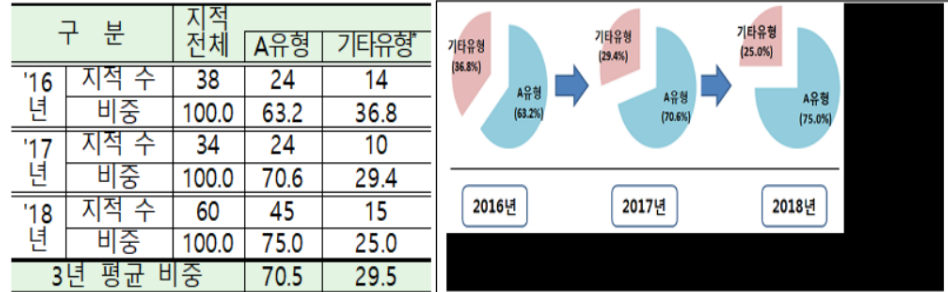
□ (회계위반 유형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당기손익, 자기자본) 지적비중\*은 전체의 70.5%(최근 3년 평균)로 높은 수준입니다.

\* (핵심 사항 지적비중) '16년 63.2% → '17년 70.6% → '18년 75.0%

◦ 투자자 의사결정 시 중요한 회계정보로 활용되어 정보효익이 큰 핵심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결산시 주의를 더욱 기울일 필요

최근 3년간 당기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A유형) 적발현황

(단위 : 사, %)



\*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의 주식미기재, 계정과목 재분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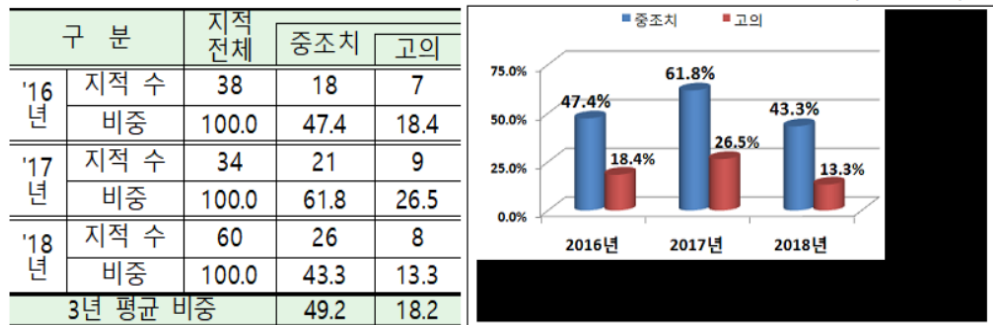
□ (중조치 지적비중) 감리결과 회사에 대한 지적 중 외부 공표대상\*(중과실 이상)이 되는 중조치 지적비중은 '18년 43.3%로, 최근 3년 평균(49.2%)을 하회하는 등 감소 추세입니다.\*\*

\*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회사 및 감사인의 위반 및 조치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표(외감규정 §38①)

\*\* (중조치 지적비중) '16년 47.4% → '17년 61.8% → '18년 43.3%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전체 지적건수 중 중조치 비중

(단위 : 사, %)



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수는 총 164사이며, '18년에 크게 증가 ('16년 43사 → '17년 43사 → '18년 78사) 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회계법인 전체 지적건수 164건\* 중 4대 회계법인의 지적건수는 55건으로 약 33.5%의 비중을 차지

\* '16년 17사(4대), 26사(기타) → '17년 18사(4대), 25사(기타) → '18년 20사(4대), 58사(기타)

□ (공인회계사) 최근 3년간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 수는 총 420 명이며, '18년에 크게 증가 ('16년 108명 → '17년 113명 → '18년 199명) 하였습니다.

## 감리결과 분석

### 3. 감리결과 분석

#### 1)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회계정보의 적시성 제고

□ 新외감법下 새로이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법규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19.4.1. 시행)

◦과실 또는 중요성이 낮은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하여 기업의 감리부담 완화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

#### 2)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 강화

◦테마 등 회계부정 위험요소에 대한 중점심사와 더불어,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을 유도

#### 3)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책임성 강화

□ 감사인 변경 시 당기 감사인은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新외감법下 새로운 감독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감사인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

「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前後 해운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  
독지침」 발표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4. 23]

현황및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 해운사와 화주간 CVC계약\*은 ①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②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 ①을 리스로 회계처리 하느냐 여부가 핵심쟁점

\*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 : 일정 선박을 이용,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조건의 용선계약

□ 舊리스기준은 ①특정 자산 사용 그리고 ②사용통제권 이전(③ 자산의 운영(지시) 능력이나 권리 또는 ④ 물리적 접근 통제 또는 ⑤ 산출물에 대해 지불할 가격) 요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나, 사용통제권 이전 기준을 新리스기준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간 해운사는 舊리스기준下에서 CVC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감사인 이견 無/’18년 보고서도 적정의견)

\* 대만(IFRS채택), 중국(IFRS와 유사한 CAS채택) 해운사도 CVC계약을 舊리스기준서 下에서 리스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新리스기준은 ①식별되는 자산(③자산 특정 and ④공급자의 실질적 자산 대체권 없음) 그리고 ②고객의 사용통제권 보유(⑤고객이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 향유 and ⑥고객이 자산 사용지시권 보유) 조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며,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 해운사는 新리스기준下에서 CVC계약의 내용 中 일부(①\*)가 (금융)리스로 해석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것을 우려

\* CVC계약 : ①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② 운항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

□ 新리스기준 시행(19년) 前後 CVC계약 회계처리를 둘러싸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간 이견이 존재 → 시장 불확실성 有

○ 해운사는 新·舊리스기준서 해석·적용시 CVC계약이 리스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 일부 회계법인은 新리스기준상 일부 CVC계약은 리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舊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

CVC계약 감독지침 2. CVC계약 회계처리관련 감독지침

□ 新리스기준서 및 舊리스기준서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리스요소 포함시 리스회계처리 필요합니다.

< 19년 이전 체결된 CVC 계약 >

□ '19년 시행된 新리스기준서의 경과규정\*은 舊리스기준에 따라 계약을 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판단 오류가 없다면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회계기준원)

\* 회사는 경과규정 적용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舊기준에 따라 리스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新기준을 적용해도 됨)

□ 회사는 舊리스기준에 따라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사인도 기업의 판단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 검토 및 점검은 舊리스기준 적용 당시의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 외부감사인은 舊리스기준을 적용한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Due Process)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의 객관성·중립성·일관성, 외부용역의 전문성·독립성 등

□ 추후 재무제표 심사시 회사.감사인이 협의하여 舊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한 경우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다면 계도 조치(경고, 주의 등) 예정입니다.

○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 필요

\* CVC계약은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있어 보편적인 해외사례가 없고, 계약의 특성상 운송용역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해운사들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형성 → 오류 정정시 '제재 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경고 등 계도조치

○ '19년 이전에 체결한 CVC계약을 舊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 가능

**< 19년부터 체결된 CVC 계약 >**

- '19년 이후 체결한 CVC계약은 新리스크기준상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춰 회계처리
- \* K-IFRS제1116호 문단9에 따라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는 계약별로 판단해야 함

**동 감독지침의 성격 3. 동 감독지침의 성격**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닙니다.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4. 향후계획**

- 동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이에 따라 회계감독업무를 수행
-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회계개혁 정착지원 TF, 4.17일)
-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4.12일(금) 지난해 11.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18.11.6.~'19.5.6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 인하  
: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

□ 5.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

\* ('18.11.6~'19.5.6) 15% 인하 → ('19.5.7~'19.8.31) 7% 인하

□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임.

\* 금번 인하폭 15%는 과거('08년 10%, '00년 휘발유 5%.경유 12%)보다 큼

□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 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됨

\* 당초 유류세 한시인하('18.11~'19.5) 발표 시 세수감소 예상액 : 6개월간 2.0조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1, 2019.04.08)

  -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 2019.03.21)

  -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 중 정상가격 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배당으로 처분 또는 간주된 부분에 대한 소득구분 및 적용세율에 대하여
  -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회신함. 본 예규는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쟁점소프트웨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3D 설계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경험·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 등이 이미 축적된 기술력 및 영업력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국내 개발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66, 2019.04.05)

  -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화한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비공개 ○○○를 제공받지 않았고, 개별주문에 따른 것이 아니며 그 대가가 사용량이나 사용수준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소프트웨어는 **사용시간, 사용자수 등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지는 점**, 쟁점소프트웨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3D 설계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경험·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 등이 이미 축적된 기술력 및 영업력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국내 개발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현장확인 결과 **유지보수를 통한 업데이트·패치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신제품이나 복잡한 프로그램의 경우 ○○○의 직원을 직접 한국으로 초대하여 교육하는 컨설팅 용역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와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제품 배급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프트웨어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